

動物藥事

□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新規 許可

업 체 명 (등록번호)	대표자	제 조 관리자	소 재 지	비 고
한국콜마(주) (제130호)	윤동한	김신규	충남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170-7	동물용 의약품 제조업
(주)웰립 (제131호)	임홍규	문성근	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00-3	동물용 의약품 제조업

□ 動物用醫藥品等 輸入管理者 新規 承認

업 체 명 (등록번호)	대표자	수 입 관리자	소 재 지	비 고
(유)벌과사람들 (제218호)	양봉덕	노영희	대전시 중구 은행동 32-6	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업
(주)밀레핏 (제219호)	심준희	황정호	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38	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업
(주)메덱스 (제220호)	김경동	조영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301호	동물용 의료용구 수입업
(주)벳서비스 (제221호)	김정수	박 석	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신조빌딩 3층	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업
다스림상사 (제222호)	신인호	신인호	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29-5 에어뷰 1209	동물용 의료용구 수입업
(주)에스팜 (제223호)	김동호	임민재	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3-3	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업
(주)에덴가축 약품 (제224호)	조혜성	홍명순	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301-22	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업

□ 動物用醫藥品 製造·輸入業 閉業 申告

업 체 명 (등록번호)	대표자	소재지	비고
(주)씨에스지 (제158호)	안창기	대전시 중구 은행동 32-6	수입업

□ 動物用醫藥品 製造·輸入業 休業 申告

업 체 명 (등록번호)	대표자	휴업기간	비고
(주)두산 (제17호)	유병택	2003.09.01 2004.08.31	제조업
동선산업(주) (제52호)	정현용	2003.09.01 2005.08.31	제조업

□ 動物用醫藥品 製造業 再開業 申告

업 체 명 (등록번호)	대표자	제조업 재개일자	비고
(주)이노바이오 (제79호)	백연수	2003.09.01	

□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許可事項 變更

업 체 명 (변경일자)	구 분	당 초	변 경
서울화장품 (2003.08.07)	업체명	서울화장품	(주)서울화장품
한양화학공업사 (2003.08.21)	대표자 소재지	박 성 환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744-1	박성환, 박정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744
(주)제일바이오 (2003.08.27)	연면적 변경	4,097.04㎡	6,725.28㎡
(주)현대의료 기기 (2003.08.27)	대표자	윤 수 현	정 태 현

□ 動物用醫藥品等 輸入者 確認事項 變更

업 체 명 (변경일자)	구 분	당 초	변 경
한강파마켄 (2003.07.28)	대표자 업체명 소재지	김 영 순 한강파마켄 충남 공주시 산성동 189-3	심 영 진 공주가축약품 충남 공주시 신관동 596-5
성우무역 (2003.08.01)	업체명 소재지	성우무역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94-11	성우택G.S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8-8 2층
메리알코리아 (주) (2003.09.05)	본사	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 8층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9-5 주호빌딩 3층
대농케미칼 (2003.09.06)	본사	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34-1	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25-4
베트컴코리아 (2003.09.17)	업체명	베트컴코리아	베트컴코리아(주)

□ 動物用醫藥品 品質管理優秀業體 新規 指定

업체명 (변경일자)	품질관리 책임자	제조관리 책임자	적격제형
(주)성원 (2003.08.27)	고경중	박종공	사료첨가제, 경구산제, 내용액제, 외용액제

□ 農林部 2004年度 家畜 防疫事業 計劃(案)

농림부는 2004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(안)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, 시·도 및 해당기관에서 동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단위 : 천두수건, 천원

구분	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사업비
예방 주사	소탄저기종저(혼합)	400	72,000
	소전염성비기관염	300	294,000
	소유행열	600	978,000
	소아까바네병	300	786,000
	돼지콜레라	43,000	3,096,000
	돼지일본뇌염	2,000	460,000
	돼지TGE-Rota	2,000	1,100,000
	돼지오제스키병	740	251,600
	개 광견병	1,400	840,000
	진돗개 방역	20	271,000
	닭뉴캐슬병- 부화장	600,000	2,400,000
	농 가	600,000	2,400,000
	닭마이코플라즈마	3,500	385,000
	광견병 미기예방약	220	572,000
살포 실시비	-	132,000	
소 계		1,245,480	14,037,600
검진	우 결 핵	454	259,800
	소 부루세라 MRT	89	34,710
	소 부루세라 RB	73	304,120
	돼지오제스키병	350	577,500
	닭 추백리 평판	85.6	10,700
닭 추백리 ELISA	17.4	45,240	
소 계		1,069	1,299,150
기생충 구제	소 진드기	1,000	66,000
	꿀벌 응애류	1,100	1,056,000
	꿀벌 노제마병	1,100	1,650,000
소 계		3,200	2,772,000

□ 돼지콜레라 豫防接種 關聯 過怠料 賦課 指針

농림부는 지난 8월 21일 돼지 사육농가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100% 실시와 돼지콜레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을 마련하였다.

[과태료 부과기준]

◦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

혈청검사		사육규모	
항체양성율	과태료 금액	사육두수	과태료 금액
50-80% 미만	120만원 이상	100두 미만	130만원 이상
10-50% 미만	200만원 이상	100-500두 미만 (모든 10-50두미만)	200만원 이상
10% 미만	250만원 이하	500두 이상 (모든 50두 이상)	250만원 이하

◦ 예방접종증명(확인)서 휴대의무 위반

사육두수	과태료 금액
100두 미만	250만원 이상
100-300두 미만 (모든 10-30두 미만)	300만원 이상
300-500두 미만 (모든 30-50두 미만)	350만원 이상
500-1000두 미만 (모든 50-100두 미만)	400만원 이상
1000두 이상 (모든 100두 이상)	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
□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 改正

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(농림부령 제1448호, 2003.09.18)하였다.

◦ 주요골자

- 소독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집유장 영업자, 부화장 운영자, 사료제조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대상자별로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.
- 3개월안에 농장 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을 갖추도록 함.
- 축사면적이 300㎡ 이상인 축산농가들은 농장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300㎡ 미만의 축사는 소독시설 설치 의무 면제
- 50㎡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는 앞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단체로부터 방역교육을 받도록 함.